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 심층분석을 통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 방안

2026. 8.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	2
III. 문제점	7
IV. 정책목표와 추진 과제	9
V. 통합대응방안	10
1. 처벌·수사 강화하여 불법생태계 근절	10
2.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제재 강화 ..	12
3.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 ..	14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	15
VI. 과제 추진일정	18
1. 과제 추진일정	18
2. 법령 개정	19

I. 추진 배경

- 피해자의 신고 등을 통해 실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는 지난 5년 간 17,716건 발생*

* 디지털성범죄 발생건수(경찰청): ('21)4,349→('22)3,201→('23)2,314→('24)3,579→('25)4,273

-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재유포 반복으로 피해가 지속적으로 재발, 10대·20대 등 저연령대 피해 집중

* 지원 피해자: ('18) 1,315명 → ('25) 10,637명(신규 54.9%, 지속 45.1%)

** 10·20대가 전체 피해자의 77.6%(8,258명) 차지, 특히, 합성·편집 피해는 91.2%



<출처: 2025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보고서>

- 불법촬영물등을 빠르게 찾아 삭제 요청*하고 있으나, '삭제 불응', '지속·반복 게재'하는 불법사이트가 여전히 존재**하여 피해자 고통 지속

* 중앙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개소 이래 168만 건 이상 삭제지원('18.4월 ~ '26.4월)

** 연도별 삭제 불응률 : '22년(24.4%)→'23년(31.2%)→'24년(24.7%)→'25년(28.5%)

- 특히, 불법사이트의 대부분은 국내법상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99% 이상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삭제 불응에 대한 적극적 제재 곤란

<수집 사이트 등록 국가 현황('26년 기준)>

합계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캐나다	홍콩	체코	세이셸	프랑스	호주	러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기타*
16,346	12,972	546	455	263	229	196	186	175	152	121	116	113	115	106	601
(100%)	(79.4%)	(3.34%)	(2.78%)	(1.61%)	(1.4%)	(1.2%)	(1.14%)	(1.07%)	(0.93%)	(0.74%)	(0.71%)	(0.69%)	(0.7%)	(0.65%)	(3.68%)

* 기타: 앵골라, 불가리아, 아랍에미리트 등 기타 국가 및 조회 불가(93개)

※ 도메인이 연결되는 서버 IP를 RDAP(Registration Data Access Protocol) 조회하여 해당 IP의 ASN 등록국가로 집계

⇒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삭제 지원 중심의 대응을 넘어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통합 대응 방안 마련 필요

II. 불법사이트 운영 생태계 현황

1. 분석 개요

- (분석 대상)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 정보 및 수사 자료 활용 분석

- ① 중앙디지털센터가 삭제지원 과정에서 수집('18.5.~'26.5.)한 피해촬영물 URI 682,953건 중 사이트 중심으로 중복 제거한 34,628개 URL

※ URI : 인터넷 상 자원을 식별하는 표준 형식 문자열, URL : 사이트 단위의 도메인 주소

- ② '21.1.1~'26.7.15까지 불법사이트 운영으로 검거된 27건의 수사 자료 분석

- (분석 방식) 범죄 규모뿐 아니라, 내부 운영구조 확인을 위해 1)사이트 중심의 양적 분석과 2)수사자료 중심의 질적 분석 병행

1) AI기반 다계층 식별요소를 활용하여 현재 활성화 여부를 확인하고, 콘텐츠, 광고, 결제, 인프라 등을 분석

2) 범죄스크립트 분석기법 활용, 각 사건의 생산·유통·소비·수익 단계로 분해하여 분석

2. 분석 결과

① 불법사이트 규모

- (접속가능 규모) 34,628개 중 6,683개(19.3%)가 음란물 유통 목적의 불법사이트로 활성화 상태, 그 중 3,832개는 국내망에서도 접속 가능

<불법사이트 규모>		
구분	사이트 수(개)	비율(%)
접속 가능 사이트	6,683	19.3%
국내 상용망 접속 가능	3,832	(11.1%)
VPN 우회경로만 접속 가능	2,851	(8.2%)
접속 불가 및 기타 유형	27,945	80.7%
접속 불가	운영 중지	14,615 (42.2%)
	접속 오류	2,906 (8.4%)
	도메인 재판매 페이지	761 (2.2%)
기타 유형	도박 등 타 유형	9,624 (27.8%)
	일반 커뮤니티	39 (0.1%)
합계	34,628	100%

※ 국내 상용망은 KT, VPN은 PROTON.JP 기준으로 통계 산출

- **(피해규모)** 접속 가능 사이트 6,683개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타 언어
이나 ‘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
- 1,316개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5만개**로 추정
- 이름(별칭), 직업, 거주지역, 연령, SNS 계정, 연락처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정보***와 함께 유출

* 중앙 디센터의 '25년 삭제지원 318,020건 중 31.5%(100,242건)는 신상정보 동반
또는 단독 유포 건임

<불법사이트의 한국 관련 영상 규모(상위 5개 사이트)>

A사이트	385,416개
B사이트	237,494개
C사이트	217,211개
D사이트	69,684개
E사이트	32,060개

2 운영 형태

- **(운영방식)** 불법사이트는 ①**무료 개방형** 또는 ②**유료 회원제** 형태로 운영

구분	무료 개방형	유료 회원제
특징	① 영상재생형 - 직접 스트리밍 방식으로 운영 - 제목, 키워드 검색 기능 제공 - 콘텐츠를 복제한 백업사이트 운영 - 다량의 영상물 동시 유포 경향 - 도촬, N번방 등 성착취 카테고리 ② 파일공유형 - 중국어 등 외국어 사용 - 미리보기 형식으로 공개 후, 해당 영상물 구입·저장할 수 있는 링크 게시 - 동일 피해 촬영물 동시 업로드 경향	▶ (회원제) 아이디비번 요구, 개인정보는 미수집 ⇒ 진입장벽은 없으나, 차단, 모니터링 회피 ▶ (포인트 등급제) 등급(브론즈-실버-골드-플래티넘)에 따라 접근 가능한 게시판 제한 ⇒ 열람 욕구가 등급 상승 동기로 작용 ▶ (포인트 획득 경로) 출석체크, 게시물댓글 작성, 영상물업로드, 연계 도박사이트 가입, 암호화폐 ▶ (유통 유인 설계) 추천, 조회수 많은 경우 상위 등급 부여, 다운로드시 게시자에 포인트 부여 ⇒ 불법촬영물 유통을 구조적으로 유도 ▶ (소통게시판 운영) 불법영상물과 무관한 정치, 사회, 유머 등 커뮤니티 기능 병행 ⇒ 불법사이트 이용 심각성 희석, 가해 일상화
수익	▶ 도박등 불법 사이트 배너광고 다수 확인 ▶ 유료 링크 연결 시 가상 계좌	▶ 암호화폐 결제 주소 발급, 포인트 제도 운영 ▶ 불법사이트 배너광고 게시
예시		

- **(운영군집)** 화면에 표시된 정보뿐 아니라, **웹구조, 도메인, 콘텐츠 등
기술적 흔적***을 추적한 결과, **운영자가 동일한 385개 그룹** 식별

- 표면상 유사성이 없는 사이트가 동일 운영군으로 확인되거나, 불법
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가 동일 운영군인 것으로 판명

* GA4, GTM, 미디어 호스팅 주소, CSS/JS 해시값, 텔레그램 연락처 계정 등의 고가치 정보와
파비콘 해시, 도메인 패턴, 선행 도메인, SSL, 페이지 제목 패턴 등을 활용·분석

<운영자가 동일한 그룹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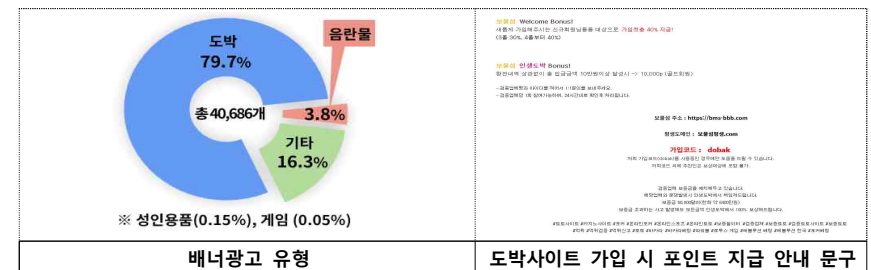
구 분	10개 미만 사이트	10개 이상 사이트	20개 이상 사이트
그룹 수 (총 385개)	364개	14개	7개 (최대 26개 동시 운영)

<동일 운영군 예시>

<사례①>
표면적 유사성이
없으나, 동일
운영군으로 확인

<사례②>
불법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가 동일
운영군으로 확인

- **(불법성 연계)** 국내망으로 접속되는 사이트 중 **1,674개의 사이트**에 도박·
성매매 등 배너 광고 40,686개가 게재되어 또 다른 불법으로 유인
- 특히, 불법촬영물 삭제 이력이 있는 불법사이트의 **27.8%**는 도박
사이트였으며, 도박 사이트 가입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등 성착취물을
도박으로 유인하는 미끼로 이용



- **(운영기간)** 불법성이 확인되어 국내망에서 접속차단이 된 뒤에도
검거까지 3~7년간 운영이 지속되었으며, 일평균 접속자는 수만 명
<경찰청 검거 사례>

경찰청(보도일)	운영기간	이용 규모
경기북부청('24.5.)	약 4년	일평균 약 2만명
대전청('25.6.)	약 7년	일평균 약 3만6천명
경기남부청('26.5.)	3년 9개월	가입 계정 약 54만명

- **(역할 분업)** 불법사이트 개발, 운영, 불법촬영물 유통, 자금인출 행위가
분업 형식으로 구성되어 다수 피의자가 존재

◆ 경찰청 검거 사례	
▶ 전북('22.12): 개발자는 사이트구축서버관리 대가로 2.2억 원, 운영자는 도박배너 광고로 3.7억 원을 취득	
▶ 대전('25.6): 해외총책-국내 현금인출책-국외체류 운영자의 분업구조로 운영, 총책을 애과도르에서 검거	

3 수익 구조

- **(수익 규모)** 경찰에서 검거한 126개 불법사이트 중 수익이 확인된
117개 사이트의 총 수익 규모는 약 304억 원에 이릅니다
- 손쉽게 사이트를 개설*하여 도박·성매매 등 배너광고 게시 수익 창출
- * 현직 프로그래머(피의자)는 피의자 조사 시 '큰 노력을 들이지 않고 본업과 병행
하며 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는 부업'이라 진술

<불법사이트 검거 사례('21년~)>

연번	수사관서	운영사이트	범죄수익규모
1	서울청	3건, 6개	도박 광고 1억4천8백만원
2	부산청	5건, 10개	도박 광고, 유료포인트 11억1천만원
3	대구청	3건, 6개	도박·성매매 광고 15억9천만원
4	대전청	2건, 2개	도박 광고 21억1천만원
5	경기남부청	4건, 36개	도박·성매매 광고 및 유료 포인트 215억8천만원
6	경기북부청	3건, 27개	도박·성매매 광고 2억2천5백만원
7	충북청	2건, 2개	도박 광고 14억원
8	전북청	1건, 15개	도박 광고 5억9천만원
9	전남청	2건, 11개	도박·성매매 광고 15억원
10	경북청	1건, 1개	불특정
11	경남청	1건, 10개	도박 광고 1억5천만원
합계		27건, 126개	약 304억원

- **(수익구조)** 불법촬영물 유통사이트에 평균 34.7개의 도박 배너 광고가
게시되어 있으며, 최대 300개까지 배너 광고를 게재하여 수익 창출
- 도박, 성매매, 저작권침해 사이트 광고뿐 아니라, 콘텐츠 재생 시
여행, 쇼핑물 등 일반 광고도 현출
- 배너 광고 1개당 최소 50만~300만원*으로, 최소 약 연 2억 원의 수익을
취득할 것으로 추정되며, 배너공간 확보를 위해 여러 개의 사이트를 운영
- * 배너 1개당 월 50만원 (서울중앙지법 2024고합1067 판결)
배너 1개당 월 200~300만원 (전남청 수사자료, '26.6)

<도박 광고 수익 추정>

산정기준	적용 단가(월)	월 수익 추정		연 수익 추정	
		1개 사이트	전체	1개 사이트	전체
933개 사이트에 평균 34.7개 게시	50만원(하한) 300만원(상한)	1,735만원 1억 410만원	162억원 971억원	2억 820만원 12억 4,920만원	1,943억원 1조 1,655억원

4 차단 회피·경로 우회 방식

- **(차단 회피)** 운영중지·도메인 재판매 중인 사이트 15,376개의 대부분은
폐쇄된 것이 아니며, 차단회피를 위해 도메인만 바꿔 운영 지속
- 텔레그램·오픈채팅·문자메시지·SNS 및 링크모음 사이트 등 우회
주소 안내 채널을 통해 차단 후 교체된 도메인을 재유포

◆ 경찰청 검거 사례	
▶ 서울('24.8): 도메인 85개를 미리 구매하여 수시로 변경하고, 주소 안내 웹페이지 5개를 별도 운영	

- **(경로 우회)** 해외 서버이나, 원활한 영상 재생 등 국내 접속 편의를 위해
불법음란사이트의 78.8%가 CDN*을 이용하고 있어 접속차단 조치 무의미
- * CDN(Contents Delivery Network): 지리적으로 분산된 서버 이용, 데이터를 빠르게 제공하는 기술

<분류별 CDN 사용 현황 총괄>

분 류	도메인 수	CDN 사용	Cloudflare	Amazon	기타 CDN	CDN 미사용
불법음란사이트	6,683	5,264 (78.8%)	4,911 (93.3%)	182 (3.5%)	171 (3.2%)	1,419 (21.2%)
도박 등 타 유형	9,624	5,530 (57.5%)	4,081 (73.8%)	1,095 (19.8%)	354 (6.4%)	4,094 (42.5%)
일반 커뮤니티	39	21 (53.8%)	12 (57.1%)	9 (42.9%)	0 (0%)	18 (46.2%)
합계	16,346	10,815 (66.2%)	9,004 (83.3%)	1,286 (11.9%)	525 (4.8%)	5,531 (33.8%)

III. 문제점

- **(피해반복·삭제불응)** 불법촬영물등은 주로 불법유해사이트를 중심으로 유포·재유포가 반복되며, 삭제 불응으로 이어져 피해 지속

<플랫폼별 삭제 지원 건수>

(단위: 건, %)

연도	합계	불법유해사이트	검색엔진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클라우드	스트리밍	기타*
2025년	318,020 (100%)	163,996 (51.6%)	80,359 (25.3%)	43,033 (13.5%)	11,555 (3.6%)	12,919 (4.0%)	3,073 (1.0%)	3,085 (1.0%)

* 개인 간 공유(P2P), 웹하드, 블로그, 자료 보관소(아카이브) 등

<플랫폼별 삭제 불응 건수(비율)>

(단위: 건, %)

연도	합계	불법유해사이트	기타(검색엔진, SNS 등)
2025년	89,848 (100%)	76,478 (85.1%)	13,370 (14.9%)

☞ 근원적인 재유포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사이트 폐쇄 중심의 대응 필요

- **(처벌수사 한계)** 불법사이트 운영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수사인력 부족
- '16년 소라넷 사건 이후 주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 12건에 대한 판례 분석 결과, 불법사이트가 성착취물 확산·재생산의 근원이 되고 있음에도 사이트 개설·운영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부재
 -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처벌되어 집행유예 판결 등 입법적 한계* 존재
 - * ▲방조범으로 분류되어 필요적 형량 감경, ▲양형기준 부재 및 방조범 요건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한 처벌 수위 미약, ▲영상물 종류별로 적용 법률이 달라 혼란 가중
 - 시·도 경찰청에 사이버성폭력 수사팀(전국 총 127명)을 운영 중이나, 신고사건 위주 수사 중, 적극적인 불법 사이트 인지 수사 어려움*
 - 불법사이트 운영자를 어렵게 검거하더라도 불법사이트 폐쇄 곤란**
 - * 미신고 사건이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25년 경찰 접수사건 4,273건, 중앙 디센터 피해지원 건수 163,996건)되고, NCMEC 등으로부터 제공받는 아동성착취물 수사 단서도 연 7만건 이상으로 수사 대상 방대하나 인력의 한계로 신고 사건 위주로 수사중
 - ** 불법사이트 개발·운영이 분업 형태로 이루어져 원본 서버 위치 파악 곤란, 서버 위치 파악하더라도 해외 호스팅사업자가 비협조적일 경우 서버 폐쇄 곤란

☞ 불법 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 수사기법·인력보강 필요

- **(성착취물 이용 수익 창출)** 도박, 성매매, 불법 저작권 사이트 홍보를 위한 배너광고 게재, 링크 연결 등으로 수익을 취득하나, 불법사이트에 광고를 금지하는 법률*은 없어 제재 곤란

* 「표시광고법」에 부당허위 광고 금지, 「정보통신망법」에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 금지 및 불법행위 광고성 정보(스팸문자) 전송 금지 조항만 있음

- 성착취물 열람을 위해 결제 유도(암호화폐 결제 주소 별도 전송), 성착취물 업로더, 도박사이트 가입자 포인트 지급 등 불법 유인 행위 심각

☞ 불법 사이트의 광고 수익 차단 등 수익원 차단 대책 마련

- **(차단 한계)** https 방식의 암호화된 프로토콜 보편화로 사이트 자체를 막지 않는 한 게시물 단위 차단은 불가능

- ECH(Encrypted Client Hello)와 QUIC(Quick UDP Internet Connections, 퀵)의 등장에 따라 기존 장비와 방식으로는 차단 불가*

* <관련보도> [단독]차단했다던 성범죄물, 70% 그대로 떠...“국가가 너무 무책임”(5.21. 한겨레)

- 차단 우회를 목적으로 다수의 도메인을 구매하여 수시 변경하는 도메인서플링, CDN, VPN 우회 이용 등으로 차단 조치 무력화

☞ 새로운 차단기술 개발·도입으로 실효성 제고 및 강화된 제재조치 필요

- **(이행 한계)** 국내사업자 및 국내 법인이 있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삭제 신속 처리, 필터링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충실히 이행 중이나,

- ‘해외서버 기반 불법사이트 등’의 경우, 삭제 불응('25년 기준 28.5%)에 대한 제재* 조치 곤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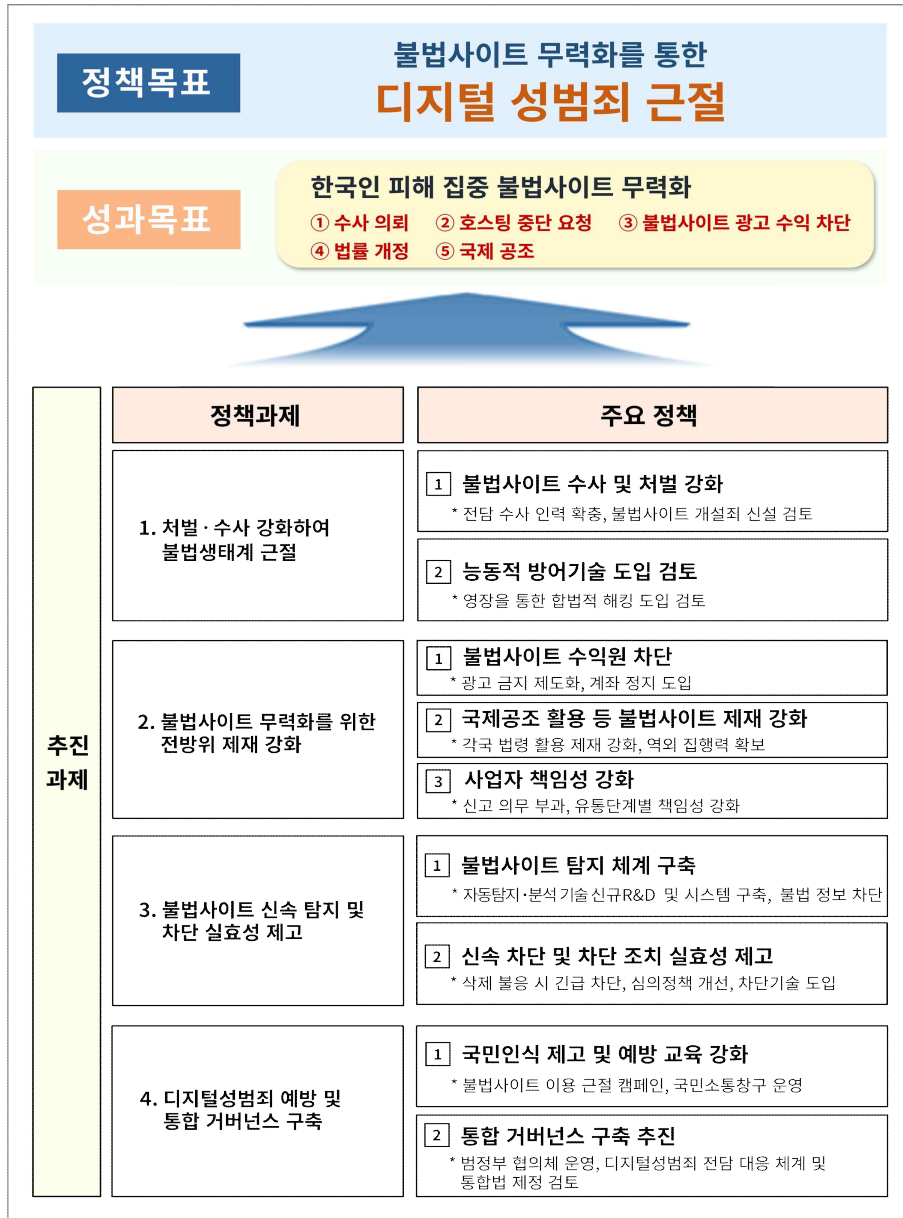
* 삭제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 유통방지 미이행시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 기술적·관리적 조치 미 이행시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등 제재조치 시행 중

- 불법사이트가 한국어 표기, 한국 관련 카테고리를 두고 CDN을 통해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외규정 이행력 한계로 삭제 조치 곤란

* 방미심위 심의 현황('25.1~6월): 시정요구 48,406건(삭제 4건, 이용정지 0건, 접속차단 48,402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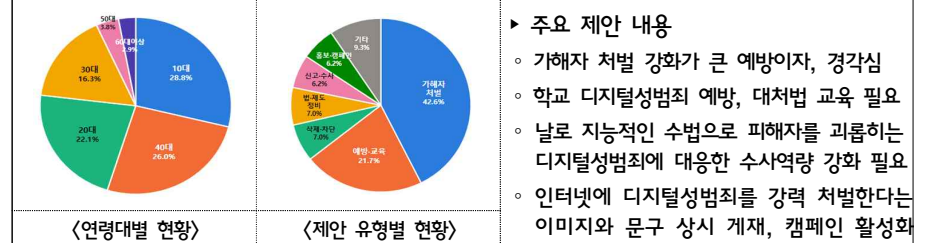
☞ 역외규정의 이행력 확보 및 적극 대응을 위한 통합 거버넌스로의 확장 추진

IV. 정책 목표와 추진 과제



V. 통합 대응 방안

◆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요 국민제안 ('26.7.27~8.2, 네이버 공익광고 활용)
 - 총 104명 참여 (10대20대 54.8%, 가해자 처벌 강화 제안이 42.6%로 다)



정책과제 1. 처벌·수사 강화하여 불법생태계 근절

현행	개선
- 불법사이트 개설·운영자 처벌조항 부재 - 불법사이트 인지 수사 저조 - 증거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 한계	-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 독립범죄화 검토 - 불법사이트 전담 수사팀 운영 및 집중 수사 - 능동적 방어기술 도입 검토

1 불법사이트 수사 및 처벌 강화

- (처벌 강화) 도박장 개설죄와 유사하게 불법사이트 개설 행위를 독립 범죄화하여 방조범이 아닌 정범으로 강력히 처벌하는 입법 (성폭력처벌법 개정) 검토 법무부, '26.하~

유사 입법례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집중 수사)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을 신설하여 불법사이트 운영자 검거를 통한 원본 삭제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사력 집중 경찰청, '26.하~
- 불법사이트 쏠 구성요소 분석을 통해 홍보 채널 및 연계된 도박 사이트까지 추적하여 불법 사이트 운영 총책 대상 인지 수사 추진



- 국제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사정보 확보 등 수사 역량 확대 및 외국 수사기관(美 FBI·HSI 등) 및 국제기구(인터폴·유로폴 등)와 검거 등 공조 지속
- 美 NCMEC, CRC 등에서 아동 성착취물 유포·소지자 정보를 제공 받아 다수 유포·소지자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급 인지 수사에 활용

구분	활용 방안
NCMEC (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 '98~)	▶ 美 인터넷 사업자가 플랫폼에 아동 성착취물이 유통되고 있는 경우 NCMEC의 Cybertipline에 신고 → NCMEC은 해당국가에 통보 ▶ '25년~'26.6월까지 약 10만 6천여 건을 제공받았으며, 보고서 내 IP·전화번호·이메일 주소 및 해시값 등 중요 단서를 수사 단서로 활용 가능
CRC (Child Rescue Coalition, '13~)	▶ P2P를 이용한 아동 성착취물 범죄를 추적할 수 있는 CPS 시스템 운영 중, 최근 1년간 정보(3,786건) 접수 ▶ CPS(Child Protect System): 美 NCMEC 및 97개국 수사기관이 제공하는 아동 성착취물 해시값을 등록하면 동일 해시값을 유포·소지하는 자의 IP를 수집하는 시스템

② 능동적 방어 합법적 해킹 제도 도입 검토

- 수사기관의 사이트 직접 접속을 통한 수사단서 수집 및 원본 데이터 삭제 등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도록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필요 성평등부·경찰청, '26.8월~

- ▲범죄 환경 분석, ▲기술적 대응 방안 모색, ▲법리적 타당성 검토, ▲법제 개선방안 제시 등 연구용역 및 근거 법령 개정 추진

능동적 방어기술 관련 해외 입법례	
▶ (호주) 수사기관이 범죄 인프라를 식별·교란(데이터 추가, 삭제, 계정 장악 등)하여 범죄행위를 예방·차단할 수 있는 권한 신설 (Surveillance Legislation Amendment ACT 2021)	
데이터 교란 영장 (Data Disruption Warrant)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추가, 복사, 삭제,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권한
네트워크 활동 영장 (Network Activity Warrant)	온라인 범죄 네트워크 인프라를 탐색하고 식별하기 위한 정보수집 권한
계정 장악 영장 (Account Takeover Warrant)	온라인 계정을 장악하고 계정 보유자의 접근을 배제할 수 있게 하는 권한
▶ (영국) 수사권한법을 통해 장비 간섭(Equipment Interference) 영장으로 국가 기관의 해킹 허용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장비 간섭 영장 (Equipment Interference)	중대범죄의 예방 및 탐지, 국가안보, 경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발부되며 ▲ 원격접속 침투(시스템의 취약점을 공격해 침입) ▲ 시스템의 수정·통제(데이터 삭제 또는 임의조작)를 모두 보장

정책과제 2. 불법사이트 무력화를 위한 전방위 제재 강화

현행	개선
■ 불법사이트에 광고 금지 제도 無 ■ 확정 판결 전 범죄 수익 차단 곤란 ■ 해외 서버 이용 사업자 대상 제재 소극	■ 불법사이트에 광고금지 제도 도입 ■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통한 수익구조 차단 ■ 국제공조 통한 이행력 확보, 책임성 제고

①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 **(광고 금지)** 불법사이트 주 수익원인 광고 수익 차단을 위해 불법촬영물등 유통 사이트에 광고 게재 금지, 제재조치 등 도입 추진 성평등부, '26.9월~

▶ 주요 내용: 누구든지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이트에 광고 게재 금지 ▶ 조치 대상: 팝업 등의 형태로 노출되는 일반 광고와 도박등 다른 불법사이트로 연결되는 배너제휴 링크 ▶ 제재 조치 ① 일반광고: 일반광고 게재 현황 명단 공표, 광고 중단 미조치 시 과태료, 과징금 부과 ② 불법광고: 도박, 저작권침해 등 불법사이트 광고는 긴급 차단 조치를 통해 신속 차단
--

- **(계좌 정지)**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제도'를 활용, 불법 사이트 운영에 이용된 계좌에 대한 거래정지 추진 금융위·경찰청, '26.하-

강화된 고객 확인제도(EDD : Enhanced Due Diligence)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 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중략)... 해당 거래를 종료 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금융정보분석원(FIU) 통보에 따라 금융기관이 명의인에게 EDD(자금출처 소명 등)를 요구 하면 소명완료 시까지 해당 계좌의 출금·이체가 일시 차단

② 국제 공조 활용 등 불법사이트 제재 강화

- **(제재 강화)** 美연방거래위원회(FTC, 플랫폼 규제 담당)와 협력 등 해당국 법령을 활용하여 반복적 삭제 불응 플랫폼 제재 강화 성평등부, '26.9월~
- FTC에 한국인 피해 신고 접수를 위한 전달 체계 마련 추진

현행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만 삭제 등 조치 가능 ⇨ **개선** 美 「TAKE IT DOWN ACT」(25.5)에 따라 성인 피해 촬영물 삭제 요청 48시간 내 미조치 시, 플랫폼 사업자 민형사상 제재 조치 가능

- **(역외 집행력 확보)** 삭제 지원기관(중앙 디센터 등)과 방미심위의 삭제 요청에 대한 불응 시, 해당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해외 호스팅·CDN 사업자에게 범부처 합동 대응 **성평등부·방미통위·경찰청·방미심위, '26.8월~**

- 불법성 공문 발송(성평등부, 경찰청, 방미통위 등 부처 공동)을 통해, 해당 사이트 서비스 중지 등 공식 요청
- 미응답, 조치 미이행 시 호스팅 사업 등록 국가의 규제기관, 국제 인터넷 핫라인협회(INHOPE)등을 통해 제재 방안 협의

◆ **국제 인터넷 핫라인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 ▶ 온라인상 아동 성착취물 대응을 위해 유럽 6개국(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의 공동 주도로 비영리협회 설립('99~)
- ▶ 전 세계 국가별 핫라인을 안전하게 연결하기 위한 ICCAM(국제 아동 성착취물 신고·공유 시스템, I See Child Abuse Material) 구축('09~)
- ▶ ICCAM을 통한 현지 핫라인의 직접 삭제 조치로, 국내 요청만으로도 전 세계 삭제 가능

③ 사업자 책임성 강화

- **(신고 의무 부과)** 플랫폼사업자에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탐지 시 삭제뿐 아니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처리할 신고창구 설치·운영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발의, '26.3) **성평등부, '26.9월~**
- 사업자가 자신의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콘텐츠 발견 시 사용자ID, IP 주소 등 신고 의무화 → 각 국의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해외 사례

- ▶ 미국은 플랫폼사업자(구글, 메타, 애플, X 등)가 자신의 플랫폼 내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나 관련 범죄 징후를 발견하면 반드시 NCMEC 국립아동실종학대예방센터의 Cybertipline에 신고하도록 의무화
- ▶ NCMEC은 관련 신고 내역(IP주소, 이름 등 이용자 정보)을 해당 국가의 수사기관에 수사자료로 인계(경찰청에 제공한 현황(26.上): 사이버탐라인 1,729건)

- **(의무 주체 확장)** 현행 부가통신사업자 중심의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에서 나아가, 플랫폼 - 호스팅 - CDN - ISP에 이르는 유통 단계별 책임 강화 방안* 검토 **방미통위, '26.9월~**

* 플랫폼(게시물 삭제, 계정정지, 재업로드 방지), 호스팅사업자(원본삭제, 호스팅 중단), CDN(캐시 삭제·전송 제한), 검색서비스(검색결과 제외, 미리보기 제거), ISP(접속 차단)

정책과제 3.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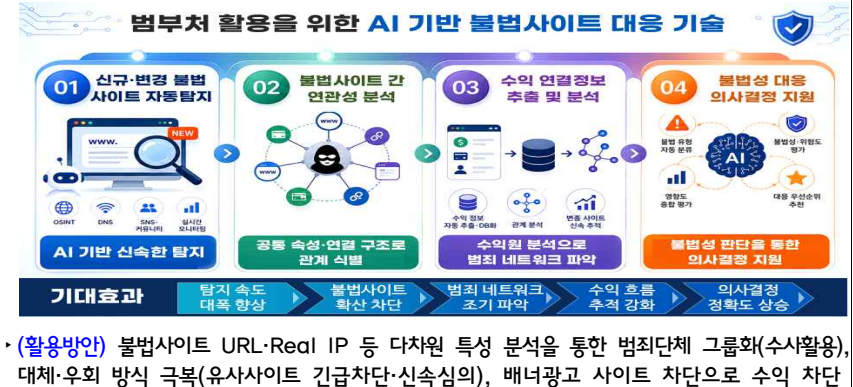
현행	개선
■ 불법사이트 사전 탐지 등에 한계 ■ 삭제 불응사이트에 대한 대책 부재 ■ 불법사이트 차단 한계	■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분석 시스템 도입 ■ 긴급차단 요구권 등 도입 ■ 차단기술 도입 및 심의 방식 개편

① 불법사이트 사전 탐지 체계 구축

- **(신속 탐지)** 도메인서플링 방식을 분석·예측하여 자동 탐지하고, 사이트 간 유사도 및 불법성 분석을 통해 신속 차단 등 범부처가 통합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 R&D 및 시스템 구축 **범부처 공동, '26.하~**

범정부 활용 AI 기반 불법사이트 전주기 대응 기술 개발

- ▶ **(필요성)** 수익 모델을 공유하는 온라인 범죄 생태계 무력화를 위해 부처별 공동 대응 필요
- ▶ **(내용)** 탐지·수집→동일성·계보 분석(다차원 핑거프린팅 기반)→수익원·범죄네트워크 역추적→의사결정 지원(긴급차단·신속심의·수사연계)을 관통하는 불법사이트 쏘주기 대응 기술



- **(불법 정보 송·수신 차단)**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불법 유해사이트 수집 정보를 공유받아 불법성 확인, 차단조치 수행 **성평등부·KISA, '26.8월~**
- 스팸문자 키워드 필터링 체계 구축을 통해 불법사이트 정보 발송 단계에서 사전 차단, 해당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선제 대응 강화

KISA 스팸 문자, 불법사이트 정보 제공
성평등부 필터링 키워드 설정, 불법성 확인 및 조치
문자사업자·이통사 불법정보 필터링 및 해당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②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차단 조치의 실효성 제고

- **(긴급 차단)** 불법촬영물 삭제요청 지속 불응*(3년이하 징역, 1억이하 벌금)시 성평등부 장관이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접속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성폭력방지법 개정) **성평등부, '26.8월~**

*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5 제①항,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제7조의5(불법촬영물등에 대한 긴급차단)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 및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의 법 제7조의 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응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 QUIC, ECH 등 새로운 암호화 통신 기술에 대응하여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을 위한 ¹⁾ 타당성 검토 및 ²⁾ 기술 개발 추진 **방미통위·과기부, '26.8월~**

¹⁾ 민간기업 플랜티넷의 차단기술 도입 검토를 위해 방미통위 주관 실무협의체 구성 (ISP(9개社), 학계, 법조계, 연구계, 관계부처 등)하여 검토 중(∼'26.8월)

²⁾ **비복호화 기반 ETA**(Encrypted Traffic Analysis, 암호트래픽 분석 기술) 원천 기술 개발(과기정통부 R&D 과제 선정), 기술테스트 및 시범적용(∼'27년)

- **(심의 정책 개선)** 미러사이트, 유사도메인 사용 등 동일·유사사이트는 기 심의로 간주, 신속 차단 **방미심위, '26.8월~**

정책과제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현행	개선
■ 디지털성범죄 처벌, 규제, 지원을 위한 기관, 법령 분산	■ 디지털성범죄 전담 기관 신설 및 통합법 제정 등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① 국민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

- **(캠페인)** 방송·유튜브·SNS 등을 활용하여 '보는 것도 범죄다', '불법사이트 접속·이용 근절' 캠페인 추진 **성평등부, '26.하~**

- **(국민 소통 창구 운영)** '디지털성범죄STOP 통합누리집'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 ①국민 정책 제안+②불법사이트 제보를 받는 국민 소통 창구 상시 운영 **성평등부,국민권익위 '26.하~**

※ 네이버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공익광고 배너를 활용 국민참여주간 시범운영(7.27 ~8.2)

- **(예방 교육)** 불법촬영물 소지·시청·저장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예방교육 콘텐츠 제작 및 초·중·고·대학 등에 배포 **성평등부, 계속~**

- 초·중등학교 현장지원단*(26, 400교), 대학생 대상 참여형 교육(26, 10교), 예방교육 콘텐츠(웹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제작 등 추진 **교육부, 계속~**

* 포티켓 현장지원단 : 지역전문가(폭력예방·양성평등·공간안전 등) 약 100인으로 구성, 학교 내 불법 촬영 취약공간(화장실 등) 점검·컨설팅 및 학교 맞춤형 예방교육·캠페인 지원

② 범정부 공동 대응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추진

- **(단기) 범정부 공동 대응 강화 및 지속 가능한 대응체계 마련**

- **(범정부 협의체)**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해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기관장이 참여하는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26.7.~)' 수시 운영(추진성과 반기별 발표) **범부처 공동, 계속**

- **(실무협의체)**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책 수립 및 이행상황 지속 점검, 불법사이트 조치 방안 수립 및 성과관리 추진(매월) **범부처 공동, 계속**

- **(통합지원단)** 불법사이트 탐지·차단 및 서비스 제공 중지, 불법광고 점검 및 제재조치, 신고창구 운영 등 상시 대응 **성평등부, '27~**

* 현재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총리 훈령으로 설치.운영 중

- **(중장기) 디지털 성범죄 통합 거버넌스 구축 추진** **성평등부, '28~**

- **(전담 대응 체계)** 디지털성범죄 신고·조사, 삭제 명령, 사업자 제재 권한, 예방적 감독권 등을 망라한 디지털성범죄 대응 전담 대응체계 마련 검토

해외 사례

- ▶ **(호주)** Online Safety Act (2021)에 근거를 두고 규제·신고·조사·삭제명령·제재 등의 기능이 통합된 독립 규제 기관(eSafety Commissioner) 설치
- ▶ **(네덜란드)** 온라인 테러 및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대응을 전담하는 독립행정기관으로 ATKM(2023)을 설치, 호스팅사업자에 대한 삭제·차단명령 및 과징금부과
• Autoriteit online Terroristisch en Kinderpornografisch Materiaal
- ▶ **(싱가포르)** OSRAA(2025)에 따라 온라인안전위원회를 두고 지원기구로 온라인안전위원회(OSC, 2026)를 운영, 콘텐츠 삭제명령 불이행 시 접속차단·앱 배포중단 명령

- **(통합법 제정)** 피해자 중심의 통합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가칭)」 제정 추진 검토

· 피해지원-제재조치-수사까지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분산되어 있는 소관 법령*을 통합하는 연구용역 추진('27~)

* 행위 처벌「성폭력처벌법」, 유통 방지 및 사업자 제재「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피해자 지원「성폭력방지법」

통합법 제정 필요성
▶ (원스톱 대응체계 구축) 처벌·유통방지·피해자 지원을 하나의 법률체계에 두어 피해자 중심의 체계 구축
▶ (전담 기구 근거 마련) 호주의 eSafety Commissioner와 같은 전담 기구 설치 근거 마련
▶ (플랫폼 사업자 의무 체계화) 사업자 의무 및 제재를 하나의 장(章)으로 통합하여 규율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력 강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여 개별법 사후 개정에 따른 공백 최소화

VI. 과제 추진 일정

정책과제 및 실천과제	일정	소관기관
1. 처벌·수사 강화하여 불법 생태계 근절		
① 불법사이트 수사 및 처벌 강화		
① 불법사이트 개설죄 도입 검토	'26.하~	법무부
② 불법사이트 특별수사팀 신설 및 집중 수사	'26.하~	경찰청
②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 검토		
①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 및 법 개정 추진	'26.8월	성평등부, 경찰청
2.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전방위 제재 강화		
① 불법사이트 수익원 차단		
① 광고 금지 제도 도입	'26.9월~	성평등부
② 불법사이트 운영 이용 계좌 지급 정지 추진	'26.하~	금융위, 경찰청
② 국제 공조 활용 등 불법사이트 제재 강화		
① 각국 법령 활용 제재 강화	'26.9월~	성평등부
② 역외 집행력 확보	'26.8월~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③ 사업자 책임성 강화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 창구 운영	'26.9월~	성평등부
② 유통단계별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 주체 확장	'26.9월~	방미통위
3. 불법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		
① 불법사이트 사전 탐지 체계 구축		
① 불법사이트 자동 탐지·분석·대응을 위한 신규 R&D 및 시스템 구축	'26.하~	법정부 공동
② 불법정보 송·수신 차단	'26.8월~	성평등부, KISA
② 불법사이트 신속 차단 및 차단 조치의 실효성 제고		
① 삭제 불응 사이트 긴급 차단 조치	'26.8월~	성평등부
② 새로운 차단 기술 도입	'26.8월~	방미통위, 과기부
③ 심의 정책 개선	'26.8월~	방미심위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추진		
① 국민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강화		
① 불법사이트 이용 근절 캠페인	'26.하~	성평등부
② 국민 제안·제보 등 소통 창구 운영	'26.하~	성평등부, 국민권익위
③ 예방교육 강화	계속	교육부, 성평등부
② 범정부 공동 대응 및 통합거버넌스 구축 추진		
① 범정부 디지털성범죄 대응 협의체 운영	계속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② 실무협의체 운영 및 성과 관리	계속	성평등부, 방미통위 경찰청, 방미심위
③ 상시 대응 체계 구축	'27~	성평등부
④ 디지털성범죄 전담 대응체계 마련 검토	중장기	성평등부
⑤ 디지털성범죄 대응 특별법 제정 검토	중장기	성평등부

법령명	일정	소관기관
1. 처벌·수사 강화하여 불법 생태계 근절		
① 불법사이트 개설 독립 범죄화(성폭력처벌법) 검토	'26.하~	법무부
② 능동적 방어 제도 도입을 위한 법 제정 검토(청소년성보호법)	'26.8월~	성평등부
2. 불법사이트 폐쇄를 위한 전방위 대응 강화		
① 광고금지 제도 도입(성폭력방지법)	'26.9월~	성평등부
② 플랫폼 사업자 신고 의무 부과 및 신고 창구 설치(청소년성보호법)	'26.9월~	성평등부
3. 불법 사이트 신속 탐지 및 차단 실효성 제고		
① 긴급차단요구권 도입(성폭력방지법)	'26.8월~	성평등부
4.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통합 거버넌스 구축		
① 디지털 성범죄 대응 특별법 추진	'28~	성평등부